

하여 배우자 명의의 가등기를 설정하여 증여물건에 대한 매매계약, 저당권 설정, 가등기 설정 등 일체의 법률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어겼고,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매각되어 더 이상 임대료 수입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임대료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약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.

나. 가등기설정으로 인한 증여계약의 취소

(1) 위 증여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생존한 동안 피고들은 증여물건에 대한 매매, 저당권설정, ~~가등기 설정~~ 등 일체의 법률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으나, 아래 [표2]와 같이 소외 이근식과 소송 중이던 2015. 11.경 자신의 배우자들에게 증여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가처분 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.

[표2]

연번	피고	상대방	등기일자	접수번호	등기원인
1	전민준	이정원(배우자)	2015. 11. 16.	제65361호	2015. 11. 16. 자 증여예약
2	전성준	이미정(배우자)	2015. 11. 26.	제67277호	2015. 11. 25. 자 증여예약
3	전영신	김경완(배우자)	2015. 11. 16.	제65359호	2015. 11. 16. 자 증여예약
4	전영준	최영금(배우자)	2015. 11. 26.	제67275호	2015. 11. 25. 자 증여예약

(2) 위와 같은 가등기 설정이 위 증여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에는 이 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며,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들에